

# 충주시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

의안 번호	11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4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은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
(안 제3조, 제4조)
- 나.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
(안 제5조 내지 제10조)
- 다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1조, 제12조)
- 라. 관련정보제공, 비밀준수의무, 위원실비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 내지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상황 : 년7,200천원
- 다.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0.3.12~4. 1)결과 : 의견없음

## 충주시조례 제 호

# 충주시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충주시내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아동학대, 학교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유괴, 실종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 
③ 시장은 아동과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 
④ 시민은 누구나 아동·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**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역연대의 설치·운영

**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**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“충주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”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**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아동·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  2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
  3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  4.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
  5.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  6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개인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4개소 이상 기관 및 시설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역연대의 기능)**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위기 아동·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4. 지역 내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
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 (회의)**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간사)**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아동·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### **제3장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**

**제11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·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업비의 지원)**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관련정보의 제공)**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5조(실비보상)**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 보호시책을 위한 회의 및 업무 추진에 출석한 경우에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  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  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  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  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 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### 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 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1997.8.22>

## 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 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  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-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